고시 제 호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범위)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비수도권의 범위)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별표 1]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1. 영 제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지역은 우대지역으로 하고, 영 제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한다.

2. 우대지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 지역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	군위군, 남구, 서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옥천군, 제천시
충청남도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경상북도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상남도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

3. 특별지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상북도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별표 2]

비수도권의 범위(제3조 관련)

구분	대상 지역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